

<의안번호 제2006- 70호>

# 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12. 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. 12. 7.

## 2. 개정이유

-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체계 혁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
-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### 가. 정원의 조정

- 공무원 정원 : 680명(변동없음)
  - 직급별 정원 조정(5급 : 31명 ⇒ 32명, 9급 : 64명 ⇒ 63명)
  - 소속기관별 정원 조정 : 복지관담당 본청 이관(4명)
    - \* 본청 : 265명 ⇒ 269명(증 4명) \* 사업소 : 64명 ⇒ 60명(감 4명)

### 나.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

- 당초 06.12.31일 ⇒ 변경 08.12.31일로 연장
  - \* 복식부기 전담 인력 : 2명(6급 1, 8급 1)
  - \*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전담 인력 : 1명(7급)

### 다. [별표]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 참조

#### 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관련 조직관리 지침 : 도 행정과-11382('06. 9. 19)
- 예산조치 : 인건비 45,000천원 정도소요
- 입법예고('06. 11. 1~ 11. 20) : 의견제출 없음.

#### 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주민생활 지원 체계혁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
공무원 총정원인 680명에 대하여는 변동없이 직급별 정원중  
- 5급의 정원을 31명 ⇒ 3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대신  
- 9급의 정원을 64명 ⇒ 63명으로 1명을 감원하려는 것이며,
-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현 조례의 부칙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(6급 3명, 7급 3명, 8급 2명)중 3명(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)이 2006. 12. 31일부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부칙 조항을 2008. 12. 31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 
-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된 사항이었음을 확인 되었으며

<p>♠ 한시정원 : 3명(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) - 6급 1명, 8급 1명 : 복식부기 전담 인력 - 7급 1명 :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전담 인력 ※한시정원 승인공문 : 경상남도 행정과 -12688('06. 10.17)</p>
---

-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6. 참고자료

### 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3조관련)
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
					소계	기술센터	보건소			
총 계		680	269 (265)	14	134	61	73	60 (64)	45	158
정 무 직		1	1							
일반직	소계	534	221 (219)	8	78	23	55	40 (42)	40	147
	4급	2	1	0	1	1	0	0	0	0
	4~5급	2	1	0	1	0	1	0	0	0
	5급	32 (31)	12 (11)	3	2	1	1	3	1	11
	6급	143	64 (63)	3	10	5	5	10 (11)	12	44
	7급	165	81 (80)	2	25	10	15	12 (13)	12	33
	8급	127	49	0	35	5	30	9	10	24
	9급	63 (64)	13 (14)	0	4	1	3	6	5	35
별정직	소계	17	1	0	16	0	16	0	0	0
	6급	1	1	0	0		0	0		
	6~7급	16	0	0	16		16	0		
연구사		4	1	0	2	2		1		
지도직	소계	32	0	0	32	32	0	0	0	0
	지도관	2	0	0	2	2				
	지도사	30	0	0	30	30				
기능직	소계	92	45 (43)	6	6	4	2	19 (21)	5	11
	6급	3	1	0	1	0	1	1	0	0
	7급	9	3	1	2	1	1	3	0	0
	8급	14	2	2	0	0	0	3	1	6
	9급	28	19 (18)	1	1	1	0	5 (6)	1	1
	10급	38	20 (19)	2	2	2	0	7 (8)	3	4